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총 계	5,853,998,867	175,619,965
일반 회 계	4,807,810,000	144,234,300
특 별 회 계	1,046,188,867	31,385,665
공기업특별회계(지역개발기금)	696,232,146	20,886,964
기 타 특 별 회 계	349,956,721	10,498,701
·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	20,176,000	605,280
·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	2,260,000	67,800
·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	235,960,000	7,078,800
· 소방안전특별회계	91,560,721	2,746,821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(채무부담행위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(명시이월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6,634,073천원으로 하고
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5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7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- (1) 공무원 기준인건비
- (2) 차입금 원리금상환
- (3)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배상금, 법정전출금
- (4) 재해대책 및 복구비